

부산교정기관의 역사와 과제

천 정 환*

| 목 차 |

- I. 서론
- II. 부산구치소의 역사
- III. 부산구치소의 조직과 활동
- IV.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
- V. 결어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산구치소(감옥)의 역사적 변천을 조직과 활동 및 주요 사건 등을 통해 그것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나아가 지배통제적인 다양한 정책이 일부는 그 본 모습을 감춘 채 —정확히는 언론과 대중의 교정의 본 모습에 대한 이해력의 빈약함으로 인해 상징폭력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과 사회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왔는가를 서술하였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교정관료독점체제는 시대마다 정권 이념과 결합하면서 그들의 관료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확대해왔는가를 독창적으로 서술하여 부산감옥 등 한국감옥에 내재된 중의적(重義的) 성격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구치소의 과제를 노후화와 입지갈등 등 구치소 자체의 미시

*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928jh@hanmail.net.

적 측면과 부산구치소의 이념에 영향을 끼쳐온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결론적으로 노후화된 부산구치소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새로운 이전과 신축이 필요하지만 한국교정(矯正)의 관료적 구조에 깊이 자리해 온 낡고 경로의존화된 응보적 이념에 대한 타파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핵심주제어: 부산교정기관, 부산구치소, 교정, 상징폭력, 교정관료제

I. 서론

오랫동안 부산지역사회의 현안이 되어 온 것의 하나는 2000년 이후 입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구치소의 이전문제이다. 교정기관의 한 종류인 부산구치소의 입지갈등이 장기화되고 격화되는 이유는 교정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넘비현상이 큰 원인이며 넘비현상의 저변에는 경제적 이유, 교육적 이유, 사회적 이유 등도 있지만 그 외에 감옥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역사적으로 학습되어 왔기 때문이다. 교정기관은 비선호시설이지만 서구와 달리 그 정도를 넘어서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감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법으로는 교육형주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격한 처벌을 지향한다는 의미인 응보적 이념이 강한 중의적 성격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인본주의적 행형(行刑)이었던 조선시대의 옥(獄)이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적 덧칠이 노골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거나 은밀하게 작용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감옥에 작용해 왔던 다양한 상징폭력을 이해하는 것도 부산감옥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으며 다만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조금 있는 선행연구를 보면 나진영은 부산구치소의 개선사항으로 외국인 수용관리의 적절성을 들고 있지만 부산구치소에 내재된 근본적, 거시적 관점은 접근하지 못하고 수용관리의 미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¹⁾ 김지수는 부산구치소의 입지갈등의 원인과 특징 및 전개과정을 갈등관리학적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²⁾ 그러나 입지갈등의 특징을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점은 좋으나 이 역시 구치소에 대한 님비현상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으로 한국감옥의 역사에 깊이 형성된 구조적 성격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감옥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구조적, 이념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오늘날 부산구치소의 현안에 대해 근본적이고 거시적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부산감옥에 영향을 준 정치사회적 배경과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활동해 온 부산감옥의 조직과 업무내용 및 특징을 고찰하여 부산감옥에 작용한 중의적(重義的)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³⁾ 그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부산구치소의 조직과 활동 등을 살펴 보고나서 부산구치소의 과제를 과밀수용과 시설노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치소의 이전·신축이라는 미시적 측면보다는 근본적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감옥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그것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의 서술에만 있지는 않다. 그것 외에도 부산감옥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행위

1) 나진영,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교정』 292호, 2000, 74~90쪽.

2) 김지수, 「부산구치소 이전 갈등 사례」, 『공존협력연구』 1호, 2015, 121~134쪽.

3) 중의적 성격이란 감옥이 여러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가령 부산구치소는 과거에는 미결수의 구금이란 형사정책적 의미만 있었으나 공안행위를 거치면서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띠었으며 감치제가 활성화된 오늘날 범죄와 무관한 피감치자의 수용으로 수용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도소는 여러 의미를 가진 중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들이 감옥에 가한 여러 상징폭력으로 인하여⁴⁾ 감옥이 그러한 상징폭력에 가담하거나 때로는 상징폭력의 하부구조적 집행장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교정기관들은 교정독점관료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교정관료주의는 알려지지 않은 상징폭력이 되어왔음에도⁵⁾ 상징폭력에 대한 이해력이 약하다보니 여전히 교정에서의 상징폭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자 함이다.⁶⁾

또한 부산구치소의 개혁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이 개혁될 때 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부산구치소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적 변천과정도 서술하였고 따라서 부산구치소의 발전적 과제를 위하여 한국교정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부산교정기관과 관련되는 논문 및 저서, 기록물 등의 문헌조사와 아울러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 지역언론과 중앙언론 및 방송 등의 미디어 조사도 병행했다. 이외에도 부산교정기관과 관련되는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접근방법은 부산

-
- 4) 상징폭력의 예로는 일제식민행정에서 ‘근대감옥’, ‘내선일체(內鮮一體)’와 1공화국 때의 메카시즘, 3공화국 때의 ‘국가주의’, 4공화국 때의 ‘한국적 민주주의’, 5공화국 때의 ‘정의사회’ 등 수많은 정치사회적 상징폭력이 감옥과 수용자에게 법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징폭력은 피해자가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다.
 - 5) 상징폭력은 브로디외(Bourdieu)가 사용한 용어로 국가 또는 특정 집단이 상징을 조작하여 대중을 세뇌시키는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는 과거 여성들에게 현모양처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여성들은 그것이 상징폭력인줄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하여 현모양처를 자신들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듯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온 바 이런 상징조작을 통해 대중을 세뇌시키는 것이 상징폭력이다. 교정관료주의는 범죄인에 대한 교화(교정공공재)를 오로지 교정관료(교도소 공무원)만이 생산한다는 의미로 교정독점관료주의와 동의어로 사용했다.
 - 6) 상징폭력에 대해 브르디외(Bourdieu)는 상징권력이 휘두르는 힘으로 정의하여(김종영, 2016) 권력주체는 그것이 상징폭력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상징폭력이 더 위험한 이유는 잘못된 상징폭력에 대한 합리적 저항이 없으면 그것은 영원히 그러한 제도가 경로의존화(path-dependence)되어 제도의 개선이 될 입법적 동력이나 사회적 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교정기관의 역사과정을 통해 나타난 정치·사회적·행정적 성격을 서술하기 위하여 교정학적 접근 외에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관료학, 매스미디어학 등의 학제적 접근을 하였다.

Ⅱ. 부산구치소의 역사

여기서는 먼저 부산구치소의 역사를 멀리 구한말 시대부터 2018년까지의 조직, 활동, 이슈와 교정사고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다음에 정치·사회적 의미를 서술하고자 한다.

1. 역사

1) 구한말 시대

1897(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의 구한말 시대의 부산감옥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895년 칙령 제82호에 의하여 각 지방에 감옥서를 설치하되 지방 관아에 있던 감옥을 개편하고 종전의 옥사(獄舍)를 그대로 사용했다.⁷⁾ 또한 1895년 칙령 제81호에 의해 감옥관리에게도 경찰복장과 동일하게 하였고⁸⁾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정역(定役)을 하는 자에게도 공전(公錢)을 지급하였다.⁹⁾

부산에는 개항이후 통상업무와 사법경찰업무를 맡은 부산감리서가 1883년 8월19일에 설치되었다가 1896년 5월에 폐지되고 1896년 8월에

7)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2010, 196쪽.

8)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3권, 2010, 488쪽.

9)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3권, 2010, 489쪽. 여기서 정역은 감옥에서 수용자에게 지정해주는 형무작업으로 이행시 공전이 지급 된다는 것은 형무작업이 공식적 제도화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동래감리서가 설치되었으나 1907년에 폐지되었다.¹⁰⁾ 1883년에 초기(草記)한 해관감리서 설치사무 제5조에서 감리서 건물은 초량진사를 잠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초량진은 두모포진이다.¹¹⁾ 1892년 낙성된 부산감리서는 초량객사가 있던 현재의 영도 봉래초등학교 자리라고 한다¹²⁾ 부사가 동래(부산)감리를 겸하였다.¹³⁾

경찰업무를 담당한 부산감리서와 동래감리서에서 행형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동래부와 같이 감옥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원내 깃발이 있는 건물이 부산감리서의 건물이다.

<그림 1> 부산감리서 건물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일보』, 2016년 4월21일에서 재인용

1905년에는 이사청 설치에 관한 일본칙령이 공포되고¹⁴⁾ 1906년에

10) 『부산일보』 2016. 4. 21.

11) 송정숙, 「조선개항장의 감리서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3, 261쪽.

12) 송정숙, 위의 논문, 261쪽.

13) 송정숙, 위의 논문, 274쪽.

부산에 이사청이 설치되고 이사청감옥이 병설되었다.¹⁴⁾ 부산이사청은 동래감리서를 흡수해 부산 전역을 관장하였다¹⁶⁾. 부산, 원산, 인천 등 개항장에 설치된 이사청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경찰업무와 감옥업무였다.

부산 영주동에 위치했던 부산이사청의 건물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부산이사청



<출처> 『구글』, 부산이사청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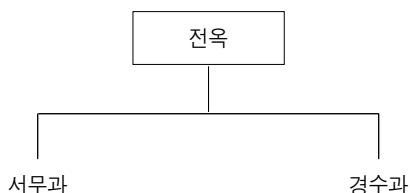
한편 1907년 감옥관계가 나오면서 감옥서를 감옥이라고 했다. 또한

- 14) 최종술, 『부산경찰의 역사와 주요 활동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29, 2012, 23쪽.
- 15) 을사보호조약이후 재한 일인을 대상으로 한 이사청감옥이 설립되었다(이종민, 『식민지화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메카니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87쪽). 그러나 이사청의 업무는 재한 일본인 경찰단속법규 등의 일본 거류민 관리와 행정 외에도 한국지방감시와 통제, 국내외 항일세력에 대한 정탐 활동과 이사청의 재한 외국인 관리감독 등을 했고 부산이사청의 사무분장에 검찰계, 감옥계가 있었다(한지현, 『1906~910 통감부 이사청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79쪽). 이사청의 감옥계가 감옥이었다.
- 16) 강창석, 『부산이사청을 통해 본 일제의 대한정책』, 『항도부산』 12, 1995, 22쪽.

1908년에 법무령 제2호에 의해 전국의 감옥을 진주감옥 등 8개의 명칭으로 반포되었고¹⁷⁾ 융희 3년인 1909년 2월에 대청동에 위치한 부산 관아(官衙)의 감옥시설을 인계받아 진주감옥의 부산 분감으로 설치했다.¹⁸⁾ 부산 본감의 구조는 ‘ㄷ’자형의 본채와 그 전면의 부속채를 감옥 시설로 했다.¹⁹⁾

이런 구조는 둥근 모양으로 담장을 쳐 그 안에 옥사를 설치한 전통 옥인 원형옥²⁰⁾과는 다른 구조이다. 감옥구조의 변화는 인본적 행형에서 응보적 행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뒤 1909년 10월에 부산 분감을 부산감옥으로 승격하고 부산감옥의 업무는 서무과, 경수과(警守課)였다.²¹⁾ 경수과는 오늘날의 보안과로 교화관련 부서는 전혀 없고 계호와 통제를 상징하는 경수과가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식민행형의 숨은 뜻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안을 상징하는 경수과는 그뒤에 이름을 달리하면서 계호과, 보안과로 개칭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1> 1909년 부산감옥 조직도



<출처> 『대한민국 교정사 1권』, 228-230쪽을 재구성

17)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2010, 223쪽.

18) 법무부, 위의 책, 230쪽. 1909년 통감부령 제31호로 부산의 이사청 감옥을 병합해 이 사청 감옥을 동대신동에 본소로 하였다(법무부, 위의 책, 264쪽).

19) 국가기록원-행형편-부산형무소(검색일: 2019. 5. 28.).

20) 『국민일보』 2014.4.11.

21) 법무부, 앞의 책, 228~230쪽. 부산감옥 직원은 전옥, 간수장, 통역, 간수였고 일본인과 한국인들로 구성되었다(법무부, 앞의 책, 228~230쪽). 경수과는 보안업무를 다루었다.

부산감옥으로 승격되면서 근대적 감옥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한다.²²⁾

2) 일제강점기

먼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 강점기에 부산감옥(형무소)의 형성과 운영 등에 영향을 준 주요한 행형사적 연혁을 보면 1895년 감옥규칙과 징역표 제정으로 종전의 5형(刑)제도에서 자유형 중심으로 변화되는 근대감옥이 도입되었음에도 일제는 1912년 조선태형령을 반포하면서 한국의 감옥을 일제제국주의의 이익을 반영하는 수단화하였고 태형이 폐지된 1920년까지는 부산감옥 등 한국감옥은 신체형과 자유형이 실시되는 모순을 보였다.²³⁾ 3.1운동 이후 태형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는 과정에서 자유형은 전면화되었다.²⁴⁾ 1925년 치안유지법은 일제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을 통제장치였고 1930년대 중반기에 누진처우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상범 감옥체계가 훨씬 정교해졌다.²⁵⁾

22) 국가기록원-행형편-부산형무소 (검색일 : 2019. 5. 28). 국가기록원의 행형편 부산형무소 자료에 의하면 1909년 초기 부산감옥의 구조는 장방형의 평탄한 부지 주위를 사각의 담으로 두르고 정문과 가까운 곳에 청사가 계획되었으며 그 후면으로 통로로 연결된 ‘ㄱ’자형의 감방과 취사장이 계획되었고 ‘ㄱ’자형의 감방은 가운데 복도를 두고 좌우로 감방이 배치되었다(국가기록원-행형편-부산형무소, 검색일 : 2019. 5. 28).

23) 조선태형령 제3조에서 100원 이하의 벌금, 과료 인도 후 5일 이내에 완납치 않으면 태형으로 바뀌는 바 100원 이하의 벌금, 과료를 정한 1912년 경찰범 처벌규칙 제200조에는 불온문서의 반포나 제시, 낭독, 연설 등을 하는 경우 과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항일투쟁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태형은 감옥에서 비밀리에 집행되었다. 조선 시대의 태형이 단순한 형사범이나 질서범에 부과된 것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에 가해진 태형은 그런 성격 외에 정치적 태형의 성격이 숨어 있었다. 태형은 식민지 초기인 1910년대에 주된 처벌이었고 1920년에 이르기까지 전(全)수형인원의 절반가량에 적용되었다(이종민, 앞의 논문, 1998, 200쪽). 3.1운동 이후 문화정치가 되면서 폐지되었다.

24) 이종민, 『1910년대의 근대감옥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75, 1999, 204쪽.

25) 최정기,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75~76쪽. 일제 강점기의 사상범 통제장치는 한국전쟁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이러한 사상범 통제제도는 1980년대에 이르도록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최정기, 앞의 논문, 77~79쪽). 사상범 통제는 분리수용과 전향을 강요한 가혹한 처우였다.

1938년에 나온 가석방심사규정은 개별적 교정처우라는 명목 아래 수용자들을 일제식민지 지배이념에 순치시키는 정치적 기제로 작용했다. 조선감옥노동은 중요한 통제수단이었고 전쟁수행과정에서 수인(囚人) 노동력은 동원이 가장 쉬운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²⁶⁾ 전시에 노동자로 동원되었던 수형자는 전체 수감자의 최고 60%까지 달했고 젊은 수형자들이 국가적 긴급작업에 파견된 보국대로 선발되었다²⁷⁾. 일제강점기의 형무작업은 식민지의 노동력을 정치·경제적으로 활용한 성격이 아주 강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부산감옥의 변천과 조직 및 특징을 살펴보면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해 전국의 감옥은 부산 본감 등 8개소로 되었고²⁸⁾ 부산감옥은 기존의 감옥이 협소해 현재의 부산시 대신동에 부지를 매수해 1920년에 기공하여 1923년 3월에 이전하였다²⁹⁾. 1923년도의 부산형무소의 전경과 공장 및 1928년도의 부산형무소 배치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1923년 부산형무소



<출처> 『대한민국교정사』 1권, 264쪽

<그림 4> 부산형무소 공장



<출처> 『대한민국교정사』 1권, 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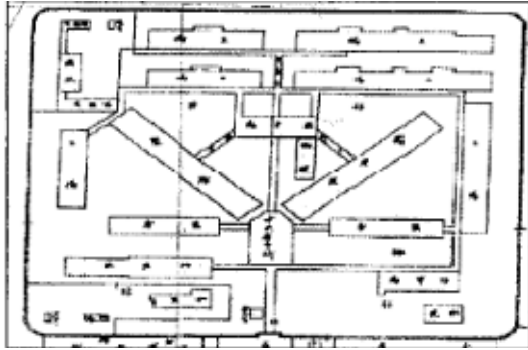
26) 이종민, 「일제의 수인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전략」, 『한국학보』 26-1, 2000, 65쪽.

27) 이종민, 위의 논문, 59쪽.

28) 법무부, 앞의 책, 2010, 254쪽.

29) 국가기록원-행정편-부산형무소(검색일 : 2019. 5. 28.).

<그림 5> 1928년 부산형무소 배치도



<출처> 국가기록원-행형편-부산형무소

국가기록원의 자료(행형, 부산형무소)에 의하면 1923년 당시의 부산형무소 구조는 중앙감시소와 청사의 공간에는 구치감과 취사장 및 욕실이 배치되어 중앙집중화된 감시체계와 방사형 감방이었다³⁰⁾. 이때 부산형무소의 직제는 서무과, 계호과, 작업과, 교무과, 의무과로 되어³¹⁾ 조직이 확대되었다. 이 중 핵심은 작업과로 한국인 수용자들의 유희노동력을 일제의 이익을 위해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일제 강점기 때 부산형무소의 직원은 전옥, 간수장, 간수, 의무직원, 교회사(敎誨師)라는 교무직원 등이 있었다.³²⁾ 일제 강점기 때 형무작업은 관사작업이 주류였고 그 외 수부작업, 위탁작업이었으며 형무작업의 대부분은 관용주의에 의해 전국 관공서에 납품되었다.³³⁾ 일제강점기 때 부산형무소의

30) 국가기록원-행형편-부산형무소(검색일 : 2019. 5. 28.).

31) 법무부, 앞의 책, 2010, 255쪽.

32) 1939년에 부산형무소 직원은 119명(한국인 52명)으로 간수장 6명, 남자간수 75명, 여자간수 1명 등이 있었고(1939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360쪽; 법무부, 앞의 책, 2010, 277쪽에서 재인용) 특히 1937년에는 일본의 승려로 구성된 교회사 등의 교무직원이 1937년 부산형무소에 3명이 있었다(법무부, 앞의 책, 2010, 301쪽). 교회사는 단순한 교화 외에도 한국인 수형자를 이념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역할도 했다.

33) 법무부 앞의 책, 2010, 307쪽, 관용주의란 형무소와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생

활동 중 타 형무소와 차이가 나는 것의 하나는 수용자의 형무작업이었다. 이때 부산형무소의 형무작업은 관사(官司)작업이 주류로 부산형무소의 작업은 어로작업관계로 인해 망공(網工)이었다³⁴⁾.

<그림 6> 부산형무소 망공



<출처> 『대한민국교정사』 1권, 308쪽

일제 강점기 때의 부산형무소의 형무작업은 다른 형무소와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갇생을 위한 성격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수용자의 노동력의 착취를 위한 형무작업의 성격이 강했다.³⁵⁾

한편 일제강점기시대인 1911년에 지금의 부민동 자리에 출소자를 보호하는 부산 보성회(補成會)라는 지역내의 수인(囚人)보호시설이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 내내 범죄인들의 계속된 증가로 행형시설이 부족

산하는 것을 말한다.

34) 법무부 앞의 책, 2010, 308쪽.

35) 특히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모든 형무작업은 군수작업으로 전환되었고 재소자는 외역작업하는 보국대에 조직되었다(법무부, 앞의 책, 2010, 494쪽). 보국대는 외박작업에 동원되었다. 부산형무소는 낙동보국대와 진해보국대가 조직되었다(이종민, 앞의 논문, 1998, 126쪽).

해 근본적이고 사후관리책으로 범죄인에 대한 보호를 실시한 바(사범 보호) 그 대상은 석방자, 집행유예자, 기소유예자 등으로³⁶⁾ 부산보성회도 그런 맥락이다. 그뒤에는 부산보성회는 범죄소년과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보호하는 소년보호운동을 한 바 이의 목적은 소년의 범죄성을 교정해 소국민으로 교도하여 국가의 인적자원의 확보였다고 한다³⁷⁾. 결국 갱생보호사업의 일종인 부산보성회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성을 교정한다는 단순한 형사정책적 면 외에 일제의 이익을 위한 순치된 조선인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사회사업조직으로 평가된다.

이 당시 부산보성회의 건물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7> 일제시대의 갱생보호시설인 부산보성회



<출처> 이정찬, 교정복지학, 3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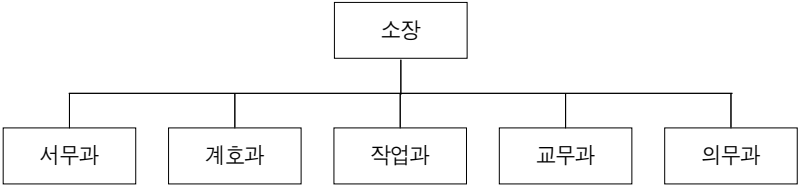
36) 한상욱, 『전시동원체제기 조선사범보호협회의 조직과 활동』,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쪽.

37) 한상욱, 위의 논문, 48쪽.

3) 미군정시대

1945년 8월 15일 급작스러운 해방이 되자 한국사회는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부산형무소 등 전국의 형무소에서도 일대 혼란이 일어나 몇 달 동안은 전국의 형무소들은 재소자들을 석방 하였고 집단탈주 등 교정사고의 빈번으로 수용인구가 급감하였고 한 동안 행형업무가 마비되었다.³⁸⁾ 해방 이후 극심한 혼란 속에 들어선 미 군정청은 총독부의 통치기구를 인수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군정업무를 끝내기 위해 개혁 대신 점진적 접근을 택했다. 그 결과 부산형무소 등 행형조직과 법령 등은 일제 강점기의 제국주의적 감옥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산형무소의 미군정시대의 조직도는 다음 표와 같다.³⁹⁾

<표 2> 미군정시 부산형무소 조직도



형무직원은 일본인 형무직원이 귀국함에 따라 한국인으로 임명하게 되었고 부산형무소에는 1947년에 172명이 채용되었으며⁴⁰⁾ 1947년 3월

38) 해방이 되자 전국 형무소에 수용된 2만 9000여명이 대거 석방 등으로 남은 재소자는 2600여명이었다(치형협회, 『형정』 11호, 법무부, 앞의 책, 2010, 330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 뒤 미군의 진주로 미군정이 실시되고 이 당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좌익사범과 시국사범 그리고 사회혼란기의 생활사범 등으로 수용인원은 증가했다.

39) 형무직원의 명칭도 전옥(소장), 간수장, 간수, 교회사, 교사, 기수 등 일제 강점기의 형무소와 똑같았다.

40) 법무부, 앞의 책, 2010, 341쪽.

기준으로 부산형무소 직원은 294명이었다⁴¹⁾. 다만 일제 강점기에 임명된 한국인 형무직원이 많아 행형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용인원은 해방 이튿날은 석방 등으로 재소자가 급감했으나 미군정의 10월 포고령의 실시와 심각한 좌·우의 대립 및 빈곤으로 인한 생활사범의 급증으로 수용인구는 다시 증가하였다. 1946년 7월 기준으로 부산형무소의 수용인원은 총 1632명이었으며⁴²⁾ 미결수와 기결수가 포함된 통계이다. 미군정시 부산형무소의 행형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감옥의 법령과 통치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관계로 통제와 사찰위주의 응보적 성격이 강했으며⁴³⁾ 다만 이때 부산형무소에도 형무사 교회사인 목사가 교무과장으로 임명되어⁴⁴⁾ 종교교화는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형무소의 형목(刑牧)제도는 미군정의 이익과 기독교의 이익이 결합된 제도로 법적 근거가 약했다.⁴⁵⁾

4) 제1공화국 시대(1948-196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제1공화국 때의 형무소 조직은 미군정시대의 과도정부와 거의 비슷하며 다만 출납 등의 업무 증대로 용도과과과제(課制)에 포함된 점이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부산형무소 직제도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41) 『형정』 1949년 5월호; 법무부, 앞의 책, 2010, 343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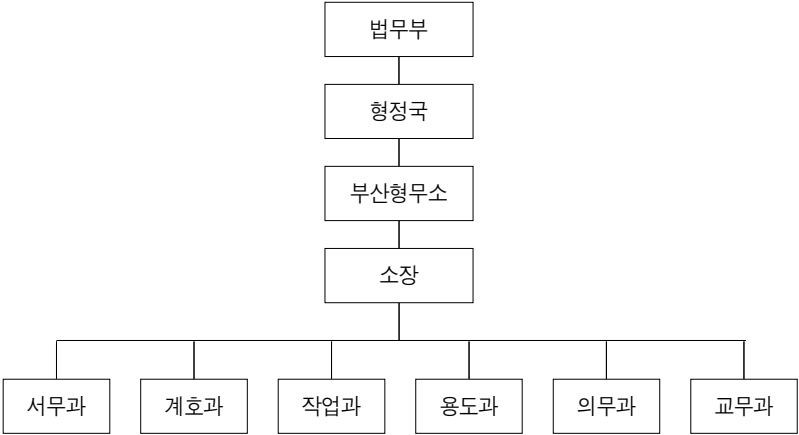
42) 『형정』1호; 법무부, 앞의 책, 2010, 349쪽 재인용.

43) 지배와 계급질서를 나타내는 복제와 계급명도 일제 강점기의 그것과 똑같았다. 미군정시 부산형무소장은 초대소장으로 목한홍, 1대 소장으로 홍종흠이었다(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3권, 2010, 403쪽), 부산형무소의 기존 직원들은 일제 강점기에 임용되어 일본식 행형방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44)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중심, 2007, 379쪽.

45) 1945년 12월 미군정청 인사행정처장인 장일형 목사가 조선기독교 남부대회의 요구 사항인 형무소의 형목(목사)제 도입을 승인했다(강인철, 앞의 책, 2007, 378쪽).

<표 3> 부산형무소 조직도



<출처> 『대한민국 교정사』 1권, 366쪽

형무직원의 직명과 구성도 미군정시대의 그것과 거의 같다.⁴⁶⁾ 다만 1955년 간수임용규정이 제정되어 형무직원 중 간수임용은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선발 뒤 형무관학교 훈련을 통해 임용되었다.⁴⁷⁾ 또한 1949년에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교도관학교 연무장에서 개최되었다.⁴⁸⁾ 또한 미군정시대에 도입된 형무소 형목제도는 1공화국 때도 계속되어 부산형무소 등 전국의 형무소에 목사가 형목이란 이름으로 교무과장으로 보임하게 된 바 이런 종교적 특혜는 이승만대통령의 지시로 가능했다.⁴⁹⁾ 1공화국 때는 부산형무소 등 전국의 형무소 재소자들을 지배한

46) 이는 미군정의 행형이념이 일제 강점기와 비슷함을 의미한다.
47)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2010, 430쪽. 간수채용고시는 신체검사와 필기시험과 구술고사로 되며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사, 국어, 작문, 산수 등이다(법무부, 위의 책, 430쪽).
48) 빈우성 외,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태권도 변천과정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56, 한국사회체육학회, 2014, 13쪽. .
49) 1957년에 부산형무소의 형목은 윤주한 목사(호주장로회 선교회)였으며 1960년에는 이신용목사가 형목이었다(『한국기독교신교연합』, 1964년, 417쪽. 강인철, 앞의 책,

법적 이념은 1950년에 제정된 행형법이었다.⁵⁰⁾ 다만 행형법의 이념과 내용은 일제 제국주의시대에 한국인을 통치한 감옥법의 잔재가 많은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⁵¹⁾ 부산형무소의 활동 중 특징적인 것은 1953년에 부산형무소에 염어공장을 신설해 부식, 식기, 신발과 형무직원의 장화를 제작한 것으로⁵²⁾ 염어공장은 부산이 어업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형무소와 차별된 형무소 내 공장이었다.

<그림 8> 부산형무소 장화 생산



<출처> 『대한민국교정사』1권, 427쪽

1960년에 부산형무소에서 주요 작업종목은 인쇄공, 목공, 양화공, 철공, 양재공, 경운공으로⁵³⁾ 이는 재소자에게 기술교육을 집중 실시한 것

2007, 380-381쪽에서 재인용). 형목의 활동은 계율적 훈련, 작업정신 훈련, 종교와 도덕훈련, 정서도야를 담당했고 매 주일 수형자들을 모아 예배를 했다(『한국기독교연감』; 1957년판; 강인철, 앞의 책, 2007, 382쪽에서 재인용). 형무소 형목이 개신교에만 가능한 것은 철저한 개신교신자로 교정선교경험이 있던 이승만대통령의 승인이 있었기에 제도화되었다.

50) 행형법 제1조에서 행형 목적을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사상의 함양, 기술교육의 중시로 규정하였다.

51) 수용거실의 배식구, 두발의 단삭조항, 징벌제도 등에서 일본감옥법의 잔재가 많았다.

52) 법무부, 앞의 책, 2010, 427쪽.

53) 법무부, 앞의 책, 2010, 470쪽.

으로 그 당시 한국산업사회의 수요와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1공화국 때 부산형무소의 김해농장에서는 미곡, 야채, 마류 등을 직영 작업하였다⁵⁴⁾.

<그림 9> 부산교도소 김해농장



<출처> 『대한민국교정사』1권, 473쪽

1공화국 때 부산형무소의 재소자 교화사업의 하나로 그 당시 문맹률이 높아 문맹퇴치사업을 재소자 교육과정에 넣어 사실상 기초교육기관의 역할도 하였다.

1공화국 때는 좌익세력의 준동에 의한 형무소 습격사건이 많아⁵⁵⁾ 형무소는 큰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또한 6.25동란으로 전국 형무소 건물의 70% 상당이 파괴 또는 소실되었다⁵⁶⁾. 다만 미점령지역이었던 부산형무소는 시설의 피해는 없었으나 인원의 급증과 이념적 피해를 크게 입게 되었다. 6.25동란 때는 전시행형체제로 되면서 부산형무소는 임시 수용시설이 병설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한동안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국의 형무소의 재소자들이 부산형무소로 많이 이송되면서 부산형

54) 법무부 앞의 책, 2010, 473쪽.

55) 법무부, 앞의 책, 2010, 487~490쪽.

56) 허주옥,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741쪽.

무소는 행정적으로는 큰 형무행정의 변화가 있었다. 6.25 때 부산형무소의 직원은 180명이고 재소자는 1600명이었으나 전국의 형무소의 재소자가 이송되어 수용인원이 8,000여명에 이르러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부산형무소 부근의 피복공장과 부산진역 창고를 임시 부산형무소 대용시설로 하고 부산소년원도 여자수용자를 수용하는 형무소 대용시설로 하였다.⁵⁷⁾

그러나 동시에 부산형무소는 6.25전쟁 당시 이념의 희생자들을 집단 학살하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현장이 되었다. 그 전에 정부수립 당시 한국사회는 좌·우익의 정치적 대립이 격렬히 대립해 온 상태인데다가 1948년 여순사건의 발생의 여파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전쟁 중에 좌익전향단체인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체포해 부산형무소 등에서 집단학살하고 전국의 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재소자 중 좌익재소자와 장기수 등 상당한 재소자가 부산형무소와 부산지역에서 집단학살이 발생했다.⁵⁸⁾ 이러한 부산형무소에서의 재소자 집단학살사건은 부산형무소 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도소에서도 발생한 민간인 예방학살범죄로⁵⁹⁾ 아직까지 이념문제 등 여러 이유로 완전한 진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57) 법무부, 앞의 책, 2010, 418-419쪽. 이때 부산형무소장인 김재은 소장은 전국의 형무소에서 피난 온 형무소 직원들의 거주와 편의를 도와주어 미답이 되었다(법무부, 앞의 책, 2010, 419쪽).

58) 진실화해조사위에 의하면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부산지구 특무대 등이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최소 1500여명을 집단학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한겨레』, 2009.3.2.). 부산형무소는 전쟁 직후 낙동강 전선이 악화되고 부산형무소에 보도연맹원을 구금할 공간이 부족하자 강도 등 일반사범 767명을 가석방시키고 집단학살을 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09.3.3.). 이 중 ‘대구감옥 안동분감’ 자료에 의하면 안동형무소의 수감자 중 492명이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고 이 중 323명은 부산형무소에서 처형된 바 주로 좌익재소자와 장기수였다(『FMTV 표준방송』, 2017.10.16.).

59) 1공화국때의 재소자 학살사건은 진실화해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여러 자료에 의해 나오고 있다.

그리고 6.25전쟁이 종료된 후 1957년 4월 30일 부산형무소는 일본인 수형자 중 어업자원보호법 위반자를 집금 수용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⁶⁰⁾ 부산형무소는 외국인 형무소의 기능도 겸하였다.⁶¹⁾

<그림 10> 부산형무소의 일본인 수형자에 대한 교회(敎誨)모습



<출처> 『대한민국교정사』1권, 459쪽

2공화국 때는 급작스러운 민주화의 분위기가 도처에 있게 되고 사회 혼란이 극심했다. 행형분야에서는 부산형무소 등에서 직원들의 하극상이 발생하였으나 행형제도는 그 전과 비슷했다⁶²⁾. 3.15부정선거 때 시위학생의 시체를 유기한 부산형무소 경무주임 박종표가 소환되고⁶³⁾ 이 사건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⁶⁴⁾ 2공화국 때는 민주화분위기로

60) 법무부, 앞의 책, 2010, 459쪽.

61) 그전에는 일본인 수형자를 각 교도소에 수용해 왔으나 어업자원보호법을 위반한 일본인 수형자는 부산형무소에 그 외의 일본인 수형자는 대전형무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앞의 책, 2010, 459쪽).

62) 법무부, 앞의 책, 2010, 504쪽.

63) 『부산일보』 1960.4.19.

64) 일제 강점기 때 항일투사들을 고문한 헌병출신인 박종표는 4.19 이후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선고 받았으나 나중에 박정희정권의 사면으로 7년으로 감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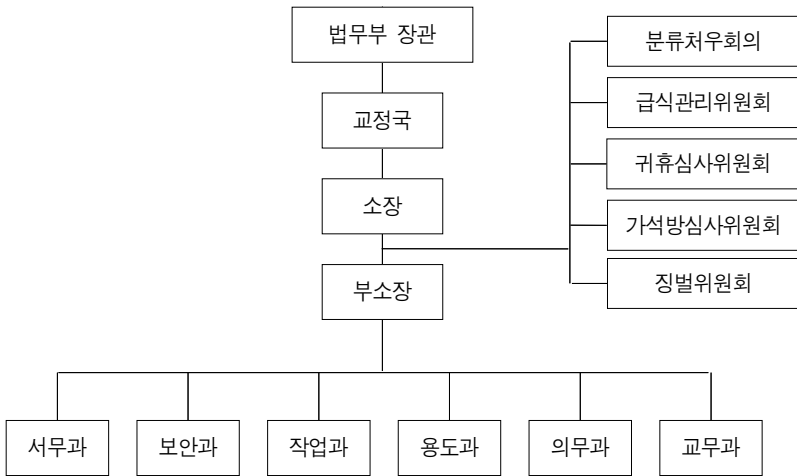
인하여 부산형무소 등 전국의 형무소에서 이승만정권때 도입된 형목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국교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종교교화는 기독교 등 모든 종파의 외부인사를 통해서 하게 하였다.⁶⁵⁾

5) 제3공화국시대

1961년에 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의 개발권위주의 정권시대의 행형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는 바 1961년 행형법 제1차 개정으로 종전의 형무소 직제가 교도소 직제로 바뀌고 구치소의 신설근거가 마련되었다.

3공화국 때 부산교도소의 직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3공화국 때 부산교도소의 조직



경남도민일보, 2015.6.29.). 그전에 악질헌병이었던 박종표는 고문행위로 1949년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그가 부산형무소에서 모범수라는 이유로 풀려났다(『경남도민일보』, 2019.6.29.).

65) 오늘날은 종교교정위원제도로 수용자들에 대한 종교교화활동을 하고 있다.

그 전의 계호과가 보안과로 개칭된 것은 교도소의 사실상 목적이 보안임을 시사한 것이다. ‘계호’는 단순한 개념이라면 보안은 계호를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⁶⁶⁾ 부산교도소는 기결수, 미결수를 동시에 관리 수용하였으므로 이때 미결수에 대한 업무는 보안과에서 담당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적 시국사범의 증가와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대기업 위주의 개발독재정치로 인하여 생겨난 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다양한 시국사범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부산교도소도 그런 영향 아래 있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보안과업무가 가장 막중했고 수용자는 일반사범과 공안사범이 혼재되었다.⁶⁷⁾

3공화국의 교정행정은 정권의 국가주의에 철저히 지배되어 수용자에 대한 교화보다는 보안논리가 사실상 최우선 교정이념으로 되면서 교정밀행주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부산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⁶⁸⁾ 또 박정희대통령 때부터 태권도가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의 종목에 들어가⁶⁹⁾ 오늘날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태권도가 이때부터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⁷⁰⁾

66) 교도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고 교도소 보안은 교도소 내에서 절대 권력으로 등장하였다.

67) 이 당시 교정기관은 정보기관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었다. 근대화와 반공을 국시로 한 제3공화국은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정치적 시위도 용공조작으로 탄압하였고 그 결과 많은 시국사범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교도소는 독재정권의 이념을 수행한 최하위 집행기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도소 보안주의는 사실상 교도소의 목적이 되는 동조 과잉현상이 강화되었다. 교도소에 수용된 시국사범들은 교화의 대상도 아니었고 단순히 수용소의 대상이었다.

68) 3공화국의 국정지표는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가 근대화로 이는 강력한 반공주의의 보안지상주의가 교정행정에 깊이 파고들게 된 이념적 계기가 되었다.

69) 빈우성 외, 앞의 논문, 2014, 13쪽. 1971년 박정희대통령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고 교도관 등에게 보급하고 수용자들을 효율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교도관 양성프로그램에 정식과목으로 채택했다(빈우성 외, 앞의 논문, 2014, 13쪽).

70) 일제 강점기에 형무직원 등 다양한 계층별로 무도대회가 열렸다(빈우성 외, 앞의 논

6) 제4공화국

1972년 10월 유신으로 등장된 박정희대통령의 제4공화국시대의 교정행정은 원래의 보안업무와 교화업무 외에 교정현장에서 4공화국의 국정지표의 실천현장이기도 했다.⁷¹⁾ 따라서 부산교도소 등의 재소자에 대한 교정업무는 기존의 기술교육, 전통적인 교화 외에 유신이념과 새마을 정신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교육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었다. 1923년에 설립된 부산교도소는 노후화되고 도심지에 밀집하여 보안과 교정활동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971년에 주례동에 새 부지를 확보해 3년 공사 끝에 1973년 주례동으로 신축하게 되었다⁷²⁾. 이때 주례동 부지는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고 황량한 외곽지대인데다가 서늘이 퍼런 공포정치시대인 유신시대라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

주례동으로 신축 이전된 부산교도소의 직제의 변화로는 구치과의 신설이다. 그 전까지 부산교도소 미결수용자의 관리를 전담했던 보안과의 업무 일부를 1976년에 구치과를 신설해⁷³⁾ 부산교도소 내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담케 한 점이다. 또한 교무과를 교정과로 개칭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교화가 교도소의 주요 업무라는 것을 명시했고 소년과를 신설하였다. 4공화국 때의 (부산)교도소의 조직도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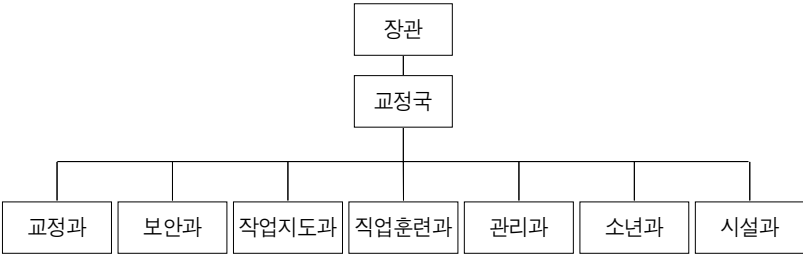
문, 2014, 13쪽). 「매일신보」를 통해 일제 때 형무직원 등이 참여한 무도대회는 정신 수련과 무도교육 차원이나 한편에서는 치안유지와 대동아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71)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상징폭력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신정권은 3공화국시대부터의 국정지표인 국방과 안보의 강화를 더 강화시키는 국정지표를 강요했다. 교도관들에게는 유신이념과 안보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정신 교육을 했고 재소자들에게도 새마을정신 교육지침(1979.2.14.)에 의해 국가와 개인, 국난 극복사, 국민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정신교육을 재소자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법무부, 앞의 책, 2010, 701쪽).

72) 법무부, 앞의 책, 2010, 673쪽.

73) 법무부, 앞의 책, 2010, 653쪽.

<표 5> 4공화국 때 부산교도소의 조직



<출처> 『대한민국 교정사 1권』, 651쪽

<그림 11> 1973년 부산교도소 신축



<출처> 『대한민국교정사』1권, 673쪽

부산교도소의 수용자는 일반사범의 증가 및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시국사범의 증가로 1976년부터 수용밀도가 높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으로 인해 기소중지자가 대거 검거되어 전국 교도소 수용인원이 6만여명으로 급증하여⁷⁴⁾ 미결수가 증가한데다가 대도시의 범죄 증가 탓도 있었다. 특히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남발로 시국사범이 증가되다가 1979년 부마항쟁 이후에는 부산교도소는 시위를 한

74) 법무부, 앞의 책, 2010, 691쪽.

학생들과 시민들도 수감되어 정치적 혼란이 교정현장에도 나타났다.⁷⁵⁾

7) 제5공화국

1981년에 등장한 군부독재정권인 전두환대통령 때의 교정행정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 군사주의 이데올로기가 덧칠된 것으로 이는 1981년에 통과된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법률과 1980년의 군부대의 순화교육의 교정예의 도입 및 1986년에 보안과의 강화로 알 수 있다.⁷⁶⁾ 5공화국 때의 교정행정의 특징은 소년사범을 다루는 보호국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미결수용자가 가결수용자보다 많았던 부산교도소는 1986년 5월 31일 미결수용기관인 부산구치소로 개칭하고 미결수용전담기관으로의 직제도 갖추기 위해 작업과를 폐지했고⁷⁷⁾ 미결수용자들의 법정출입업무와 관련된 출정과 등을 신설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주례동에 있던 부산교도소가 부산구치소로 변경되면서 그 당시 김해에 있던 김해교도소를 1987년 12월 5일 부산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결수를 수용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⁷⁸⁾ 이 당시 부산교도소의 교도작업의 특징은 특수공으로 신발공이 있는 바 이는 교정기관의 자체 수

75) 부마민주항쟁계승사업회의 김맹규씨의 증언에 의하면 1979년 부마사태 때 부산대생, 동아대생들 및 노동자, 재수생, 회사원 등이 100명 정도 입소하였고 부산지역계엄사의 위수령이 마산까지 관할하여 마산에도 관련자들도 50-100명이 입소하였다고 한다(부마민주항쟁계승사업회 홈페이지 2015.11.16.). 부마항쟁의 불씨를 당겼던 부산대학생 정광민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시위 후 동래경찰서를 거쳐 부산구치소로 이감되었다고 한다(『한국일보』 2011.10.16.).

76)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소위 불량배들에 대한 군부대 순화교육인 삼청대 교육이 효과를 보자 이것을 교정시설에도 도입했다.

77) 작업과는 기결수의 교정작업인 정역과 관련된 부서이므로 미결수용기관에는 원칙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78) 부산교도소의 연혁을 보면 1947년에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으로 개소했으며 1971년 3월 5일에 김해교도소로 개칭되었다가 부산구치소의 신설로 인하여 1987년에 부산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요품을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⁷⁹⁾

한편 정권의 정통성이 약했던 5공화국시대의 부산구치소의 수용자의 특징은 일반사범 외에도 시국사범도 많았다.⁸⁰⁾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불량배를 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삼청교육대의 할당인원을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보내자 검거실적을 채우기 위해 경찰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자를 대상으로 골라 삼청교육대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⁸¹⁾ 이러한 군·경·교의 합작에 의한 시국사범의 통제는 제3공화국인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교도소와 구치소는 정권인임을 실행하는 최하부 구조로 작용했다.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은 기존의 형사사범 외에도 정치적 시위로 인한 공안사범들로 다양화됨에 따라 철저한 계급의식과 보안논리로 무장되었던 교도관들과의 갈등으로 구치소 교정행정이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다.⁸²⁾

8) 제6공화국

1988년 노태우정부 때의 교정행정의 큰 변화로는 1991년에 전국에 4개의 지방교정청이 신설되어 교정본부와 교도소사이에 중간인선기관이 생긴 점이다. 이는 교정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조직화를 통

79)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2010, 184쪽. 부산교도소(김해)에서 생산된 신발은 운동화 250,000켤레, 방한화 50,000켤레, 고무신 200,000켤레, 구두창 50,000켤레였다(법무부 교정국 『교정작업통계집』 1989;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193쪽에서 재인용). 신발이 부산교도소의 특수공으로 된 것은 그 당시 부산의 신발산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80) 1981년 부림사건, 1981년 4월의 부산대 시위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7년 부산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 시국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81) 1980년 부산 해운대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한 경찰관이 참회록에서 경찰서별로 할당된 삼청교육대상자 인원을 채우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로 부산구치소에 찾아가 대상자를 골라 삼청교육대로 보냈다고 한다(『신동아』 2011.7.19.).

82) 시국사범은 구치소 내에서 시위 등을 자주 하므로 부산구치소 등 전국의 교정기관은 시국사범들을 여러 사동에 분산 수용하여 통제를 가했다.

해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교정관료주의의 이익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도 대구지방교정청의 일선기관으로 되어 수용자 이송 등 모두 측면에서 대구지방교정청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부산구치소의 직제는 제5공화국 때의 직제와 같았고 다만 교도관의 인력증원이 있었다. 부산구치소 수용자에서 특이한 현상으로는 부산구치소에서는 최초로 사형이 집행(1990년)되었다.⁸³⁾

또한 1990년 6월 25일 부산교도소 수용자의 권총난동사건이 전국적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정사고로 관료화된 교정행정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⁸⁴⁾ 1990년에 한국교정학회가 설립된 바 이는 교정관료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점에서 타 학회의 설립배경과 다르다.⁸⁵⁾ 이외에도 부산구치소에는 1990년 2월 3일부터 시국사범 50여명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⁸⁶⁾ 시위장소가 되기도 했다.⁸⁷⁾

1992년부터의 김영삼대통령의 교정행정의 직제는 그 전과 같았다. 다만 이때 무술교도관특채를 실시하여 부산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 기동타격대반을 운영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보안이념의 확장으로 상업적 자본언론과 교정관료주의의 결합에 의한 산물이다.⁸⁸⁾ 다만 1990년대 부산구치소 인근 부지에 대단지APT가 들어서면서부터 구치소 이전

83) 이 당시는 사형수는 미결수 신분이어서 고등법원 소재지 5곳의 구치소에 수용된다.

84) 부산교도소 10공장(신발공장)에 있던 수용자가 이송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용자가 직원과 소장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다(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364쪽).

85) 교정학회에는 교정공무원들이 더 많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학회의 간사도 교정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86) 『중앙일보』 1990.2.5.

87) 부산구치소에서는 1990년 10월 12일부터 수감 중인 70명의 시국사범 가운데 50여명의 시국사범들이 보안사 해체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부산일보』 1990.10.12.).

88) 1990년대 초에 교정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되자 한국교정관료제는 이를 조직의 확대의 명분으로 삼는 상징정책으로 무술교도관의 등장이 있게 되었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⁸⁹⁾ 1997년 12월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바⁹⁰⁾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다.⁹¹⁾

1998년부터 시작된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정행정직제는 그 전과 같았고 부산구치소의 직제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이때 교정국장이 검사장에서 교정공무원인 교정이사관으로 바뀐 바 이는 교정이 검찰로부터의 탈종속을 의미하면서 교정관료제의 이익이 반영된 획기적인 변화였다.⁹²⁾ 또 개방형제도의 도입으로 2000년 6월 천안교도소장 등 2개 직위에 개방형 직위공채를 실시했다.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 신창원이 탈옥한 일이 발생했다.⁹³⁾ 1997년 IMF여파로 생계형 경제사범이 폭동하면서 1998년과 1999년에는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6만7883명과 6만8087명을 기록하였다⁹⁴⁾. 이는 부산구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8년 9월부터 부산구치소의 시설부족으로 부산구치소의 미결수용자 500여명이 부산교도소로 옮겨와 부산교도소는 적정인원을 초과한 2250여명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⁹⁵⁾

89) 『부산일보』 2019.3.19. 특히 이때부터 지방자치의 실시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지역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쟁점화되기 시작하였다.

90) 『한겨레』 2005.5.27.

91)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자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2명이다(『한겨레』 2005.5.27.). 2019 현재도 부산구치소에는 사형수는 있으나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다.

92) 교정국장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교정공무원 쪽에서 그동안 원했던 숙원이었다. 이는 교정을 잘 아는 교정공무원이 교정국장을 하는 점에서는 순기능은 있지만 조직의 폐쇄성이 더 강화되어 외부통제의 실질화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질서논리에 충실한 교정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93) 무기수 신창원의 탈옥원인은 교도소측이 교회신축공사를 위해 담벽을 허물면서 자동감옥장치를 4개월간 중단시킨 것이라고 한다(『연합뉴스』 1999.7.19.).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보안주의적 행형이 체질화되어 버린 한국교정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통제위주의 보안사상이 권위주의정권의 이익과 결부된 것이다.

94) 『세계일보』 2017.6.28.

2002년에 나온 노무현대통령 때인 ‘참여정부’에서의 교정행정의 특성은 2007년에 법무부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되었고 교정의 인권화 추세에 따라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부산구치소의 직제는 그 전과 같았다. 다만 이때부터 부산구치소의 노후화와 과밀수용 및 입지갈등이 정치쟁점화되기 시작하여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혼거실의 과밀수용문제가 제기되자 2007년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혼거실의 1인당 기준면적을 2.48㎡에서 2.58㎡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의 수용정원도 하향 조정되었다.⁹⁶⁾ 또한 2005년에 교도관 직무규칙의 개정으로 정복여자공무원도 지휘를 받아 남자수용자에 대한 지도와 계호, 경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2004년에 부산구치소에서 부산시장이 자살하는 교정사고가 발생하여 부산구치소의 교정행정의 문제를 보여주었다.⁹⁷⁾ 2008년 등장한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된 권위적 보수정권으로 인하여 엄격한 법집행의 확립을 강조했고 이는 교정행정에서도 반영되었다. 강력한 법집행과 교정보안주의를 강조하여 이명박정부 때 처음으로

95) 『연합뉴스』 1999.7.19. 부산교도소는 11체의 수용시설이 있으며 기결수 중에서 전과 3범 이상만 수용하고 정원은 1천750명이다(『연합뉴스』 1999.7.19.).

96) <표6> 부산구치소 수용정원(2002-2007)

연도 교정기관	수용정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50,440	44,350	46,150	46,090	47,390	43,100
부산구치소	2380	1550	1550	1550	1550	1530
부산교도소	1750	1200	1200	1200	1200	1200

<출처: 『대한민국 교정사』 3권, 119면>

97) 뇌물수수혐의로 수감된 부산시장이 2월에 자살한 이후 2004년에 부산구치소에는 2명이 또 자살하자 구치소 측은 1500명 정원에 2800여명이 수감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력충원과 시설투자를 호소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4.6.25.).

교도관 임용시험에 체력검사를 포함시켜 교화능력과 필기시험이 우수한 자라도 체력이 약하면 교도관으로 입직할 수 없는 임용구조가 되었다.⁹⁸⁾ 또한 교도관의 제복과 제식을 통제적 질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고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를 기존의 4종에서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해 8종으로 더 강화시켰다. 이는 교정행정에서 보안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전까지 사형수는 작업도 하지 않는 미결수에 준해 관리했지만 이명박정부의 강력한 권위주의정책은 사형수 관리에도 적용되었다. 부산구치소에는 2008년 말까지 사형수가 6명이 있었으나 2008년 말에 사형수도 기결수에 준해 관리하도록 규정이 가능하면서 5명의 사형수가 전국의 교도소로 이송되었다⁹⁹⁾.

이명박정부의 강력한 획일주의적 국가주의는 교정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에도 변화를 가져와 2013년부터 수학, 과학, 사회가 교정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 9급 시험에 포함된 바 이는 2011년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명박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의 강조는 교정에서 보안주의를 더 강화시켰다. 2010년에 교회(敎誨)직과 분류직을 교정직으로 통합한 바 이는 교화를 주 업무로 하는 교회직을 없앤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강력한 교정보안주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부산구치소가 구치소 수용자에게 패소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¹⁰⁰⁾ 이는 수용자 교화보다는 관리와 보안을 절대시하는 교정행정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산구치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이 부산구치소의

98) 2007년에 공무원시험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교정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99) 『부산일보』 2009.2.16.

100) 부산구치소가 규정위반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무리한 징벌인 금치 21일을 2011년 7월 22일에 내리자 수용자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부산일보』 2012.4.9.). 금치는 징벌 중 가장 강력한 징벌로 운동과 면회도 금지된다.

과밀수용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2016년에 청구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구치소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하였다.¹⁰¹⁾ 이 사건은 부산구치소의 과밀수용과 노후도가 다시 사회문제로 되어 구치소 이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명박정권의 보수적 권위주의가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정부의 엄격한 법질서의 강조는 교정행정의 엄격화에도 영향을 미쳐 보안지향적 교정은 여전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는¹⁰²⁾ 권위적 교정은 여전했다.

2013년에 시작된 박근혜정부에서의 권위주의정권은 이명박정부의 권위주의보다 더 강했다. ‘무관용주의와 엄벌주의’라는 형사정책으로 인하여 교도소는 과밀수용화되기 시작하였다.¹⁰³⁾ 교정조직과 그 전과 같았지만 박근혜정부의 엄벌주의적 정책은 교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교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부산구치소 조직과 활동은 그 전과 같으며 통제지향적 교정은 여전하다.¹⁰⁴⁾ 다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교정행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화된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권교정이 강화되는 추

101) 『국민일보』 2017.8.31.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들이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산구치소의 과밀수용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국민일보』 2017.8.31.). 2심판결이 바뀐 것은 인권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영향도 있었다.

102)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10월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조사실로 보낸 교도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권고했으나 부산구치소는 수용하지 않았다(『경향신문』 2010.2.11.). 또한 수용자 동의 없이 강제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게 2011년 10월 14일 내려진 인권위의 조치 권고를 부산구치소가 거부했다(『뉴시스』 2011.1.14.).

103)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4만5488명이었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3년 4만 7942명, 2014년 5만128명, 2015년 5만3892명, 2016년에 5만6495명으로 계속 증가했다(『세계일보』 2017.6.28.).

104)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구치소 방문조사결과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보호장비를 찬 채로 용변을 본다고 진술했다(『매일경제』 2019.3.12.).

세이며 2011년부터 등장한 교정심리치료센터와 과학적 분류심사기법 등으로 인하여 과학교정과 치료교정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부산교정기관의 역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부산구치소의 역사

연도	내용
고려시대	동래현 옥사
조선시대	감영내 옥사
1895년	지방에 감옥서 설치(칙령 제82호), 감옥규칙과 징역표 제정(자유형 도입), 이때부터 옥(獄)에서 감옥(監獄)으로 명칭이 변경
1898.2	광무 2년 감옥사무개시
1907년	감옥서 관할이 내부에서 법무로 이전되고 감옥조직이 경무청에서 분리
1908년 11.20.	진주감옥 부산 분감 설치(법부령 제19조), 1908년 감옥법
1909년 2.20.	진주감옥 부산 분감(동대신동) 개청(법부고시 제10호)
1909.10.21.	부산감옥 승격(통감부령 제31호)
1910.10	전국 감옥을 부산 분감 등 8개로 개편(총독부령 제11호)
1920.	서구 동대신동에 부지마련하고 공사 신축
1923.5.5.	3.1운동 영향으로 부산형무소로 개칭(부령 제72호)
1946.1.13	미군정시대에 홍종용이 최초의 한국인 부산형무소장으로 부임(미군정시대에도 일제의 감옥법이 적용)
1950~1953	6.25전쟁으로 전국의 많은 수용자가 부산형무소로 유입되면서 부산형무소 대응 수용시설 등장(부산진역 창고 등), 재소자 학살사건,
1953년	부산형무소에 엮어공장 신설
1961년 12.23.	법무부 산하 부산교도소로 개칭(법령 제858호)
1971년	시설 이전 신축공사 착공(높은 감시탑 등 일제 잔재가 있음)
1973.12.23.	사상구 주례동에 신축 이전 완공
1986년 5.31.	부산구치소로 개칭
1987년	지방교정청제 실시로 대구지방교정청 소속으로 됨
1990년 이후~	구치소 주위에 대단지 APT단지의 형성과 구치소의 노후화와 여러 요인에 의해 부산구치소 이전운동이 여러 차례 시도되면서 입지갈등이 정치·사회적 쟁점화,
2000년 이후~	다양한 감치의 집행으로 구치소의 수용자의 다양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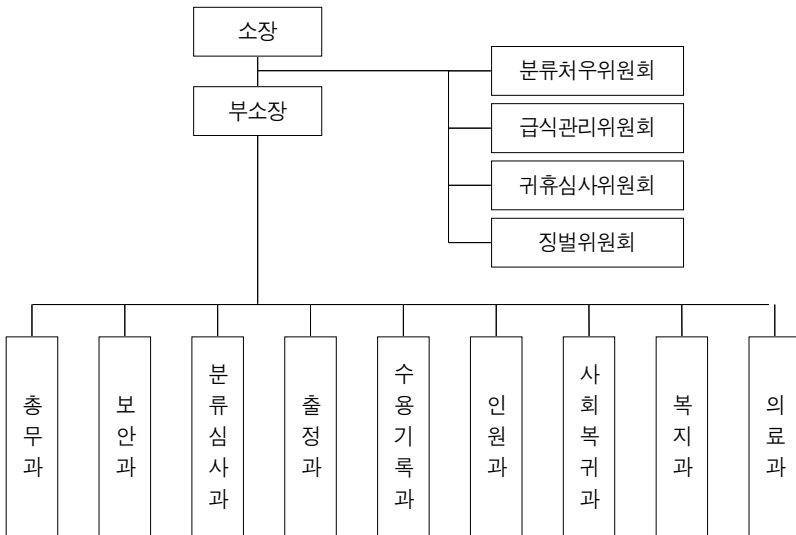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교정사』 1권을 재구성

Ⅲ. 부산구치소의 조직과 활동

1. 부산구치소의 조직과 업무내용

부산구치소의 조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부산구치소 조직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장관,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의 계선조직인 부산구치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임되고¹⁰⁵⁾ 부소장은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교

105) 부산구치소장의 직급은 초대 목한홍부터 12대 강천석까지는 전육이었고(1945년~1960년 10.20.) 13대 백홍수부터 17대 서경덕까지는(1960.10.21.~1970.10.1.) 교정관이었다. 18대 권인호부터 45대 조영호(1970.10.2.~2004.2.1.)까지는 교정부이사관이었고 46대 김태희부터 48대 이국주까지는(2004.2.2.~2006.6.29.) 부이사관으로 직명이 변경되었다. 47대 구치소장부터는 고위공무원으로 되었다(법무부, 『대한민

정관(5급)으로 계장은 교감(6급)으로 보임된다. 그 밑에는 교위, 교사(8급), 교도의 계선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무기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직원이 구성된다. 소장의 막료기관으로 분류처우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가 있다.¹⁰⁶⁾ 소장의 계선기관으로 총무과 등 7개 계선조직이 과제(課制)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과는 교정공무원의 인사 및 민원업무, 문서수발, 예산결산,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일을 담당한다.¹⁰⁷⁾ 보안과는 수용자의 수용관리, 계호, 수용자의 고충처리, 직원의 훈련, 공안사범 관리 등을 다룬다.¹⁰⁸⁾ 분류심사과는 가석방과 분류심사, 관용원 작업지정 등을 담당한다.¹⁰⁹⁾ 출정과는 출정계호를 담당하며 구치소 본래의 업무이다.¹¹⁰⁾ 사회복귀과는 수용자의 교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귀휴와 석방자 보호를 담당하는 복지적 성격을 가진다.¹¹¹⁾ 복지과는 국유재산관리와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을 담당하며 수용기록과는 이송, 교도작업이 운용, 구속기간 계산, 수용자의 수용과 석방 및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민원과는 수용자의 접견과 영치금품의 보관과 출납을 담당하고 의료과는 소 내 위생과 수

국 교정사』 3권, 2010, 403쪽).

- 106) 이러한 막료기관은 자문형이 아니고 의결기관형 막료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107) 이외에도 외부기관과의 MOU체결, 교정기관 홍보, 섭외, 외부인들의 구치소 참관 등을 취급한다.
- 108) 보안과는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교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부서로 되어 왔다. 최근에는 보안업무 외에도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두어 특정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한다.
- 109) 분류심사과는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위하여 과학적 분류를 하는 부서로 부산구치소 등 대형구치소에만 존재하고 중소형 구치소에는 없는 부서이다. 관용원 작업지정이란 부산구치소 내의 인쇄소 등 관용작업에 지원하는 수형자를 선발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 110) 미결수 등의 재판과 검찰조사를 위해 부산법원에 호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부산법원 내에 부산구치소 구치감이 있어 여기에서도 대기근무 한다.
- 111) 교화방송, 교정위원 업무협조, 구치소 내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구치소 내 부부만남의 집 운영.

용자의 보건과 의료를 담당한다.¹¹²⁾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예배 등 종교집회, 불우수용자 생활지원, 상담활동, 보라미 봉사활동,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형수 자매결원상담 등의 교화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관료화된 교정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해 교정공공서비스의 제3섹터(sector)로 작용하고 있다.

2.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특징

원래 구치소에는 형집행법 제11조에 의해 미결수용자들이 수용되는 곳이지만 부산구치소와 같은 대형구치소에는 사형수도 수용되고 있다.¹¹³⁾ 또한 1981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감치제도가 생기고 이후 감치를 규정한 여러 법률이 생기고 나서 범죄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 법원의 감치결정에 의해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부산구치소의 수용자는 이질적 성격으로 변해갔다.¹¹⁴⁾

또한 기결수는 형집행법 제11조에 의해 교도소에 수용됨이 원칙이나 구치소의 취사, 이발, 세탁 등 관용작업을 위해 관용작업 수행자가 구치소에 수용되며 벌금을 완납 못해 환형처분을 받은 벌금형 수행자도 구치소에 수용된다.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해 준수사

112) 부산구치소는 2012년 11월부터 개금 백병원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치소 내의 교정의료로 부족한 의료수요에 대해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이 화상진료를 받게 하고 있다.

113) 사형수는 부산구치소 등 몇 개의 대형구치소에만 수용되고 2018년 기준 부산구치소에는 4명의 사형수가 있다.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집행은 김영삼대통령때인 1997년 마지막으로 그 이후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114) 민사소송법 제311조, 가사소송법 제67조와 제68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질서행위 국제위반법 제54조,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소송법 제515조, 인신보호법 제19조 등의 법률에 일정한 민사상, 가사소송적, 행정적 의무 위반 시 미결수용에 준해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와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의해 강제퇴거 대상자가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이외에 여성수용자가 원하면 18개월 미만의 자녀인 유아도 같이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산구치소의 수용자들은 과거의 미결수에서 오늘날은 민사적, 행정적, 가사소송적 목적을 위한 집행장소로 되어 수용자들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 구치소 수용자의 질적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구치소 수용자의 이질성

사법목적적 구금	기결수, 미결수, 사형수,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행정목적적 구금	과태료감치, 강제퇴거대상자
민사목적적 구금	채무자감치
가사소송목적적 구금	양육비 미이행 감치, 수검위반 감치
복지목적적 구금	대동유아, 석방자 일시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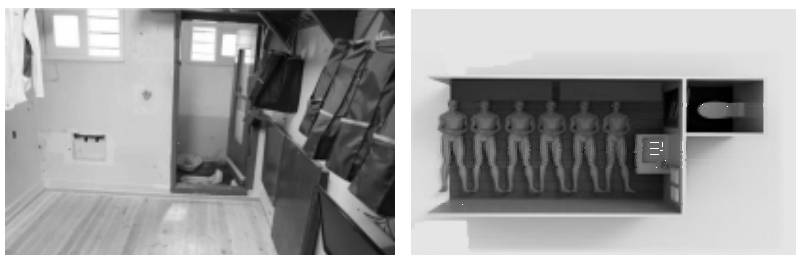
Ⅳ.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은 부산구치소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정이 있어야 한다. 부산구치소의 문제점은 부산구치소 자체가 갖고 있는 미시적 측면의 문제점과 부산구치소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관련 법령과 제도 등 거시적 문제점이 있다. 먼저 미시적 측면의 문제점에는 익히 알려져 있는 시설의 노후도, 지나치게 높은 과밀수용률, 높은 교정사고율이 있다.

특히 높은 과밀수용율과 시설적 노후도는 부산구치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장제원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부산구치소 5수용동 1층 10호를 실물사이즈로 구현해 남성 6명이 칼잠을 자는

모습을 동영상과 3D기법으로 보여 주었다¹¹⁵⁾. 2018년에 장제원 의원실이 공개한 부산구치소의 혼거실 내부모습과 남성 6인으로 된 과밀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¹¹⁶⁾

<그림 12> 부산구치소의 거실내부와 과밀모형



<출처> 장제원 의원실 제공, 『프레시안』 2018.1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에는 범죄자 외에도 범죄와 무관한 피감치자, 유치된 자 등 다양한 이질적 성격의 수용자들의 집금으로 구치소의 정체성과 교정이념의 정체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전통적 행형시스템은 인권보다 구금시설의 관리논리를 앞세웠다¹¹⁷⁾. 그런데 현대 교정 시스템에도 그러한 전통 행형시스템의 관리논리가 여전히 작용한다는 데서 거시적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 환언하면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교정에 깊이 내재되어 온 응보이념의 잔재가 여전히 굳건하게 부산구치소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는 부산구치소를 현대 교정복지이념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고 주민친화적인 현대식 고층 APT형 교정시설을 적정한 입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이 부산구치소의

115) 『로이슈』 2018.10.12.

116) 『프레시안』 2018.10.12.

117) 최종술, 앞의 논문, 2003, 78쪽.

노후도와 과밀수용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본격화된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19년째나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서울동부구치소(2017), 서울남부교정시설(2011) 등과 달리 처음부터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는 정치쟁점화되면서 넘비현상이 견고하게 확대재생산된데다가 주민참여 없이 밀실행정으로 해결하려고 한 행정적 요인과 부산시와 내, 법무부, 관련 구청들의 부처 이기주의 등이 복합된데다가 부산구치소 이전거부를 넘비현상으로 몰아붙이고 양비론으로 접근한 언론의 한계 등에 그 원인이 있다. 1991년에 있는 지방선거부터 지역정치인들은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뒤의 국회의원선거부터 구치소 이전 문제를 더 정치화되었다.¹¹⁸⁾ 언론들도 십수년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부산구치소문제를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양비론으로만 접근하여 가치지향적 의제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¹¹⁹⁾

따라서 해결방안은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되¹²⁰⁾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한 논쟁으로 되지 않도록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입지선정과정부터 주민들에게 구치소 이전의 장·단점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민주성의 확립과 이전 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자원을 확보하고 계

118) 서울동부구치소 이전문제에서 가락동 구의원과 문정동 구의원들이 협력을 통해 해결한 것은(김민영 외,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08쪽) 항상 대립만 보여 온 사상구와 강서구 정치인들과 대조적이다.

119) 십수년 동안 구치소 입지갈등에 대한 단편적 보도에만 그치고 탐사보도는 물론 외 국사례 등에 관해 한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120) 특히 일본의 미네시는 2007년에 교도소를 유치하되 미네르바 사회복귀센터로 개칭하고 높은 담과 철창을 없애고 정부와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수용자 음식을 모두 지역농산물로 하며 점심에는 구내식당에서 수용자식단과 동일한 미네정식을 저렴하게 주민에게 팔고 보육원도 센터 내에 유치했다(법무부, 『월간교정』 473호, 2015).

획 추진 시 생기는 갈등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갈등관리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호송버스로 출정하는 전통적 구치소에서 벗어나 전자사회복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¹²¹⁾ 전자(복지)사회복귀센터는 이동임박사가 주장한 원격화상재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개념이다. 이동임박사에 의하면 원격화상재판은 미결수용자, 증인, 참고인 등이 법원의 공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제약없이 어디서나 화상을 통해 공판기일에 공판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말하고 그 필요성으로 무죄추정원칙의 준수, 미결수의 인권침해와 낙인방지, 교정시설내 미결수용자 인원 분산 등을 들고 있다¹²²⁾. 그러나 모든 미결수가 원격화상재판을 받도록 하는 이동임박사의 원격화상재판은 뛰어난 주장이지만 법적, 심리적, 사회복지적 측면 등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모든 미결수용자가 구치소에서 화상재판을 받도록 현행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개정한다면 미결수용자에 따라서는 헌법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가 자신을 지지하는 방청객들과 변호인이 있는 전통적인 법정에서 판사와 직접 대면하여 변론과 방어를 하는 생생한 역동적 현상이 오히려 미결수용자에게 유리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및 변론이 되어 판사의 자유심증의 형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원격화상재판에서는 카메라맨이 촬영각도의 한계 등으로 판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전체적 법정을 모두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결과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미결수용자들이 있기

121) 전자사회복귀센터는 원격영상재판을 이용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구치소를 의미한다.

122) 이동임, 「원격화상재판을 이용한 미결수용자 공판참여절차 참가」, 『한국교정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27~32쪽.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화상재판이 아니라 원격화상재판을 원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심리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정에서 보이는 미결수용자의 반성 등 심리적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격화상재판에서는 이러한 미결수용자의 심리적 상황표집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는 원격화상재판보다는 법정에 나가는 것이 법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양형에서 유리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여기는 수용자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적으로는 장애인미결수용자, 임산부 수용자 등 미결수에 따라서는 몇시간 동안 이루어 질 수 있는 원격화상재판으로 인한 여러대의 카메라의 집중적 조명 등이 법정에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원격화상재판의 도입에서 가장 큰 거부점(veto point)은 사법부 등 관련 이해기관이 조직이익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동임박사가 주장한 원격화상재판시스템에서 법적, 심리적, 복지적 요소로 좀더 세련화시키고 가능하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구치소의 명칭도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개정해 부산전자복지구치소나 부산전자복지사회복지센터 또는 부산전자복지교정원 등으로 개칭하는 방향으로 되면 시민들의 넘비현상도 줄어 들고 굳이 부산도심에 위치할 필요도 없게 된다.

둘째로 거시적 측면에서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은 한국교정행정의 발전방안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교정의 발전방안을 통해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조는 그 목적을 수형

자의 교정교화라고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보안이념이 일제 강점기부터 가장 중시되어 오다보니 조직과 직제, 인사 등 그 모든 것이 수행자의 교화보다는 철저한 보안이념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교정의 밀행주의는 더욱더 강화되고 서구와 달리 교도소와 구치소는 시민들에게는 공포와 호기심 및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구치소 이전에 대한 일반현상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또한 보안이념의 극대화는 실질적인 교화의 축소를 가져와 출소자의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선 교도소와 구치소의 보안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교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통제적 보안이 아닌 과학적이고 인본적 보안체제로 되어야 한다.

동일한 논리로 폐쇄된 교정행정을 불식해 부산 구치소장도 학교교장 등 외부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해 경쟁레짐을 통해 관료화된 교정행정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¹²³⁾ 해방이후 관료제를 공직에 확산도입한 이래 모든 조직에서 공공서비스를 관료제독점체제에 의해 생산하다보니 독점생산에서 오는 문제점인 관료적 병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정조직이나 사회복지조직같이 고객이 존립의 목적인 조직에서는 사회적 형평의 이념이 중요한 이념이므로 오로지 능률성과 합리성만 추구하는 관료제는 고객인 수용자에 대한 교화보다는 상관에 대한 충성과 부하에 대한 지배통제적 문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동조과잉- 교도소의 질서유지는 교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마치 질서유지가 교도소의 목적인 것처럼 되는 현상- 등 다양한 관료제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안이념만을 나타내는 구치소의 명칭도 바꾸어야 한다. 일제 강점기 때 명칭인 구치소는 구치 외에 교화, 감치, 유치, 보호 등 다양

123)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과가 좋으면 그 비율을 확대하면 되며 이때 가장 긴장하는 것은 관료적 질서에만 매몰되었던 교정관료조직이다.

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법무원’이나 ‘교정원’으로의 개칭이 필요하다. 교도관 채용시험도 보안주의 이념의 달성이 아닌 교화이념이 실현되도록 완전 개편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구치소는 형사사범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범목적적 수용인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치만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감치자도 같이 수용하여 수용자의 이질화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치소 신축 때는 감치동과 복지동을 별도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¹²⁴⁾

V. 결어

이상에서 본 연구는 먼저 부산교정기관의 변천을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조직과 활동 및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정치·사회적 의미도 서술하였다.

그리고 부산구치소의 문제점을 시설의 노후도와 응보적 관점에서 건축된 구조의 문제점과 과밀수용 및 지나치게 높은 교정사고와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설명한 다음에 해결방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미시적 방안으로는 부산구치소 이전에 관한 입지갈등을 줄이는 방안과 복지구치소로의 변화 및 이질적 수용자로 구성된 구치소의 방향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교정사고율과 재범률의 저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시적 방안인 이전 신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교정에 깊이 내재된 은밀한 응보이념을 발전적으로 해체할 당위성을 운론했다.

124) 현재의 구치소에는 범죄자와 감치자가 혼거 수용되어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중심, 2007.
- 김민영 외,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박경목,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
-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1권, 2010.
-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2권, 2010.
-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3권, 2010.
- 법무부, 『월간 교정』, 473호, 2015.
- 부산부, 『부산부세요람』, 1921.
- 이정찬, 『교정복지학』, 한국교정복지선교회, 2000.
- 허주옥,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2. 논문

- 곽낙현 외, 「매일신보를 통해서 본 검도기사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2-2, 대한무도학회, 2010.
- 강창석, 「부산이사청을 통해 본 일제의 대한정책」, 『항도부산』 12, 부산광역시시편찬위, 1995.
- 김지수, 「부산구치소 이전갈등 사례」, 『공존협력연구』 1, 한국갈등학회, 2015.
- 나진영,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수용관리방안」, 『교정』 292, 법무부, 2000.
- 문혜진, 「근대 대변 별신국의 변천사」, 『항도부산』 31, 부산광역시시편찬위, 2014.
- 민현기, 『월간교정』,
- 박강우, 「푸코의 형벌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7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빈우성 외,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태권도 변천과정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 한국사회체육학회, 2014.
- 송정숙, 「조선개항장의 감리서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 이동임, 「원격화상재판을 이용한 미결수용자 공판참여절차 참가」, 『한국교정복지

- 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 이종민, 「식민지화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메카니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_____, 「일제의 수인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전략」, 『한국학보』26-1, 일지사, 2000.
- _____, 「1910년대의 근대감옥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75, 1999.
- 천정환, 「교정사고의 선행연구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복지연구』 44,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 최정기,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최종술, 「부산검찰의 역사와 주요 활동에 관한 연구」, 『향도부산』 29, 부산광역시사 편찬위원회, 2012.
- _____, 「역대정부의 경찰정책과 이명박정부의 경찰정책과제」, 『자치행정정보』 22-2,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 _____,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인권」, 『교정연구』 21, 한국교정학회, 2003.
- 한지현, 「1906-1910 통감부 이사청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한상욱, 「전시동원체제가 조선사법보호협회의 조직과 활동」,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 기타

- 『경남도민일보』 2015.6.29., ‘악질고문헌병 대명사 신상목·박종표’.
- 『경향신문』 2010.2.11., ‘부산구치소, 인권위권고 불수용’.
- 『교수신문』 2016.3.7., ‘김종영, 상징금수저 등의 차별과 배제’.
- 『국민일보』 2014.1.11., ‘전통 옥이란’.
- 『뉴시스』 2011.1.14., ‘부산구치소, 강제이발 주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 『로이슈』 2018.10.12., ‘장제원, 부산구치소 과밀수용’
- 『매일경제』 2019.3.12., ‘인권위, 교정시설 인권개선 권고’.
- 『부산일보』 1960.4.19., ‘공범 3명도 포착’.
- 『부산일보』 1990.10.12., ‘부산구치소 수감 50명 정치사찰규탄’.
- 『부산일보』 2012.4.9., ‘수형자에 무리한 징벌… 부산구치소 패소’.
- 『부산일보』 2019.2.16., ‘총 58명 사형수들’.
- 『부산일보』 2016.4.21., ‘개항장, 부산감리서’.
- 『세계일보』 2017.6.28., ‘박근혜정부 4년간 재소자 크게 늘어’.

- 『신동아』 2011.7.19., ‘삼청교육대 실적 올리려 구치소 수감자까지 생겨’.
- 『연합뉴스』 1999.7.19., ‘신창원 탈옥·재수감 부산교도소는’.
- 『연합뉴스』 2004.6.25., ‘자살·폭력 난무하는 부산구치소’.
- 『오마이뉴스』 2009.3.3., ‘형무소 집단학살, 미군도 승인’.
- 『중앙일보』 1990.2.5., ‘구치소 재소자 50여명 합당반대 단식농성’.
- 『한겨레』 2005.5.27., ‘부산구치소 사형집행관들’.
- 『한겨레』 2009.3.2., ‘한국전쟁 때 형무소 집단학살’.
- 『한겨레』 2019.2.25., ‘부산 동구, 일제강점기 형무소 체험 행사’.
- 『한국일보』 2011.10.16., ‘서화숙의 만남, 32년 전 부마항쟁 불씨 당겼던 정광민씨’.
- 『프레시안』 2018.10.12., ‘부산구치소 사망률 전국최다’.

투고일 : 2019. 05. 28. 심사완료일 : 2019. 07. 05. 게재 확정일 : 2019. 07. 25.
--

| Abstract |

A study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task of Busan
correctional institution

Chun, Jung- Hwan

I showed in this paper criminal implications of historical change of Busan correctional institution (pris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modern age through its organization, its activities, its major accidents. And asserted that controlling various policies partly behind the scenes — to be exact, the public and korean press without knowing its true self due to their poor understanding about it — has dynamically in one way as another, sometimes softly korean prison and society. In such a process, I asserted the heavy character of korean prison including Busan prison after asserting that how korean correctional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as expanded its bureaucratic profits combing the ideology of government with the times. I described the task of Busan detention center in the micro aspect based on its old age, location conflict and in the macro aspect which have had an effect on Busan detention center ideology.

In conclusion, an aged, path-dependence Busan detention center needs to be relocated and built in a new way through procedural justific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dissolve old retributivism symbol which has been built on the substructure of korean correction through colonial correction, ideological correction, security correction.

Key words : Busan correctional institution, Busan detention center, correction, symbolic violence, correctional bureaucracy.